

Korea Agro-Fisheries Trade Corp.

at | Focus

Vol. 11



**한·미 FTA 발효에 따른
한국농식품 대미 수출영향 분석**

1. 미국 수출현황 및 한·미 FTA 농수산물분야 양허내용
2.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전망
3. 주요 부류별 양허내용 및 수출전망

2011
11

at 농수산물유통공사
Korea Agro-Fisheries Trade Corporation
수출전략처 식품수출정보팀

한·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농식품 대미 수출영향 분석

I. 미국 수출현황 및 한·미 FTA 농수산물분야 양허내용	3
II.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전망	4
III. 주요 부류별 양허내용 및 수출전망	5
* 참고	15

I

미국 수출현황 및 한·미 FTA 농수산물분야 양허내용

- ◆ 한국산 농수산물식품 대미 수출실적은 '10년 기준 5.2억불 수준
- ◆ 현재 한·미 FTA 추가협상 합의문서에 따른 협상 체결시, 대미 주요수출 품목의 관세는 즉시 또는 5년 이내 철폐되나 현행관세율(평균9.4%)이 낮아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됨
- * 한미FTA 주요추진현황 : 협상타결('07.4.2) 및 공식서명('07.6.30) → 추가협상 타결 ('10.12.3)
→ 미국 상·하원 본회의 통과('11.10.12) → 한국 국회 통과('11.11.22) → 2012.1.1 협정 발효
- * 현재 한국측은 한·미FTA 여야정 협의체 운영을 통한 추가보완대책 협의중

□ 대미 한국산 농산물 수출현황

- 2010년 對미 한국산 농수산물식품 수출실적은 5.2억불 수준이며 전체 농식품 수출실적의 8.8%의 비중을 차지
 - 수출실적 : 519백만불(농산 348, 수산 142, 축산 16, 임산 13)
 - 주 수출 품목은 혼합조제식료품(42.4백만불), 권련(31.3), 배(25.4), 음료(25.1), 김(23.5), 라면(19.8), 이빨고기(18.0), 굴(17.4), 비스킷(16.3), 소주(9.0) 등임
- * 과실류, 채소류 등 신선농산물은 장거리 운송에 따른 품질관리 등의 문제로 수출실적 미미

□ 농수산물분야 주요 양허내용(요약)

- 농산물 : 품목수 기준 58.7%(한국산 수입액 기준 82.0%)관세 즉시 철폐
 - 즉시 관세철폐 품목 : 라면, 배, 조제식료품, 음료, 주류, 간장, 된장, 고추장, 삼계탕, 김치 등
- * 아이스크림, 버섯 등 기타 품목(22.7%)은 대부분 5년 이내 관세 철폐

- 수산물 : 우리측 민감 수산물(민어, 고등어, 넙치류, 명태 등)에 대해서는 장기 철폐, 비선형 관세철폐, TRQ 도입 등
- 대부분의 對미 수출 수산물은 관세가 없거나, 즉시철폐 적용

〈대미 한국 농산물 양허유형〉

양허 유형	품목기준		한국의 대미 수출 기준	
	개수(개)	비중(%)	수출액(억불)	비중(%)
즉시	1,065	58.7	1.8	82.0
2~3년/5년	10/401	0.6/22.1	0/0.05	0.1/2.0
6~7년/9~10년	92/180	5.1/9.9	0.3/0.05	13.8/2.0
10년 초과	65	3.6	0	0.0
합계	1,813	100	2.3	100

* 계절/현행관세, 제외항목 없음

II

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 수출전망

- ◆ 한·미 FTA 발효에 따른 한국산 농식품의 수출 경쟁력 제고 대상품목이 한정적 이므로 즉각적인 수출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, 향후 비관세장벽(검역 등)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강화로 수출확대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

* 대부분의 농식품 현행관세는 없거나, 평균 9.4% 수준

- ◆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에 따른 수출확대효과는 5백만불 정도에 불과하나 관세 인하 품목의 경쟁력제고 및 최근 對미 수출증가율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 으로 수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*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인하 효과 : 권련, 배, 김, 라면 등의 즉시철폐 품목의 합으로 추정

- 간장·BBQ소스(6.4%) 및 라면(6.4%), 버섯류(20%)등은 관세 즉시 또는 5년내 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로 현지시장개척노력에 따른 對미 수출확대 기대

□ 주요 부류별 수출전망

- (음료·과자류) 최근 음료 및 과자류에 대한 對미 수출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음료의 경우 현행관세가 0.2¢/ℓ로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임

- (소스류) 된장, 고추장 등은 교포시장을 중심으로 수출되고 있어 관세철폐에 따른 수출확대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보이나 간장, BBQ소스(6.4%)에 대한 수요증가 예상
- (기타 신선농산물) 관세 철폐 또는 인하에 따른 신선농산물 대미 수출확대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보이며, 검역협상 및 신선도 유지, 품위저하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
- (수산물) 현재 미국 수산물 수입에 대한 관세가 낮아 관세철폐에 따른 효과가 미미하나, 다랑어(기름담근것), 굴(밀폐용기에 넣은 것)과 같은 수출증가가 기대되는 품목개발

Ⅲ

주요 부류별 양허내용 및 수출전망

1

과실류(사과, 배, 단감, 감귤)

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배 (08.08.20.0000)	0.3센트/kg (7/1~다음해 5/31, 이외기간 0%)	즉시철폐	45	10년 균등철폐 20년(동양배 품종)
사과 (08.08.10.0000)	-	-	45	10년 균등철폐 20년(후지 품종)
단감 (08.10.90.2000)	2.2	즉시철폐	45	10년 균등철폐
감귤 (08.05.20.1000)	1.9 센트/kg	즉시철폐	144	15년 균등철폐

- 과실류 주 수출품목(사과, 배, 단감, 감귤)의 기존 관세는 미미하며 (0.3센트/kg~2.2%) FTA 체결로 즉각 철폐됨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

○ 對미 과실류 수출동향

- '10년 기준 대미 과실류 수출실적은 35,326천불로 주 수출품목은 배(25,413)임
- '10년 사과, 감귤의 검역 협상 완료로 신선 과실 수출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○ 향후 수출전망

- 과실의 미국수출은 관세보다는 검역 및 농약 안전성에 더욱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 FTA 체결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

* 배 : 수출단지 지정 및 사전 검역 / 사과(후지) : 40일 저온저장 후 훈증
/ 감귤 : 선별장 승인 필요

* 감귤, 단감 : 미국 등록 농약기준으로 생산단계부터 농약관리 필요

- 미국 또한 對한 과실 수출시 검역으로 인한 제약이 있어 FTA 체결 이후 신속한 검역협상 요구가 예상됨

* 사과 : 금지 / 배 : 금지 / 감, 감귤 : 하와이주, 텍사스주 및 플로리다주를 제외한 전 지역 금지

□ 기타 참고사항

- 현재 미국산 배, 사과는 수입위험평가 5단계 진행중으로 수입제한
- 한미 FTA 체결로 감귤보다는 오렌지의 수입량 증가가 예상

2 | 채소·버섯류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채소주스 (2009802000)	2센트/kg	즉시철폐	30	10년 균등철폐
고춧가루 (0904202000)	5센트/kg	즉시철폐	270 또는 6,210/kg	15년 균등철폐
채소 등 조제품(기타 식초,조제) (2001909090)	9.6	즉시철폐	30	5년 균등철폐
야채스프 등 제조용 조제품 (2104103000)	3.2	즉시철폐	18	5년 균등철폐
무 (0706901000)	2.7	즉시철폐	30	10년 균등철폐
새송이버섯(0709594000)	20	5년 균등철폐	-	-
팽이버섯(0709595000)	20	5년 균등철폐	30%	10년 균등철폐

- 현재 채소류는 對미 수출관세가 크지 않아 즉시철폐에 대한 영향력이 크지 않으며, 버섯의 경우 5년 균등철폐로 즉각적인 수출확대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나, 향후 현지시장진출에 유리할 것으로 전망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및 업계동향

○ 채소류

- 對미 채소류 수출품목 중 '10년 기준 1백만불 이상은 기타채소종자(4.7백만불), 채소주스(4.4), 고춧가루(2.7), 무(1.3) 등 5품목으로 기존관세율이 낮아 관세 즉시철폐에 대한 영향력이 적을 것으로 전망

○ 버섯류

- 버섯류 주요 수출품목은 새송이버섯('10년기준 4.0백만불)과 팽이버섯(3.0백만불)으로 중국산·캐나다산과 경쟁되고 있으며, 한미 FTA 타결시 캐나다산과의 가격격차를 줄임으로써 수출경쟁력을 확보를 통한 수출확대를 기대할 수 있음

- 특히 미국시장은 유기농버섯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, 가격 또한 일반버섯보다 3~4배 높아 관세인하 효과보다는 유기농버섯 생산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함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신선농산물의 경우는 관세율 보다는 장거리 운송에 따른 품질 유지와 검역의 문제 크기 때문에 한미FTA 체결이후 빠른 검역협상이 요구

3 임산물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〈 밤 〉				
(0802.40.10/탈각)	-	-	219.4	15년 균등철폐
(0802.40.20/미탈각)	-	-	219.4	
(0811.90.10/냉동)	3.4	즉시 철폐	30	
(2006.00.70/마롱그라세)	8.0	5년 균등철폐	30	
(2008.19.10/조제저장)	-	-	30	
〈 표고버섯 〉				
(0709-59-00/신선)	8.8cents/kg+20%	5년 균등철폐	45(40)	15년 균등철폐
(0712-39-10/건조)	1.3cents/kg+1.8%	즉시 철폐	45(40)	
(2003-90-00/조제저장)	6cents/kg+8.5%	즉시 철폐	20	
〈 감 〉				
(0810.90.25/신선)	-	-	50	15년 균등철폐
(0813.40.10/건조)	1.8	즉시 철폐		
〈 목재류 〉				
(4412/합판)	0-8	즉시-10년(7개)	8-12	5-10년 균등철폐 (초기5년×, 후기5년○)
(4411/섬유판)	0-6	즉시-10년(2개)	8	
(4410/PB)	0	즉시	8	

- 단기임산물의 수입은 밤, 표고, 잣, 호도, 송이 등 주요 품목에 대해 15년 이상의 관세철폐 기간 확보
- 원목, 목재칩, 석재류 등 이미 시장이 개방되어 있거나 산업 원료로 사용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세를 즉시 철폐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 및 업계동향

○ 향후수출전망

- 한미FTA 발효 후 5년간의 영향은 미미하나 5년 후 관세가 철폐되는 신선표고(28.3%)등은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수출증가 기대
- 주요 수출품목인 밤은 현재 관세가 없어 영향이 없으나, 중기적으로 신선표고 수출을 위한 사전 준비가 필요함

* 신선표고 : 현재 중국산 대비 가격열위(한국산의 약 1/2~3)로 진출애로

□ 기타 참고사항

- 우리측은 미국의 단기임산물에 대한 계절관세는 미적용
- 발효후 양국간 위생검역(SPS)위원회 설치, 엄격한 원산지 기준 적용

4 | 수산물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마른김 (1212-20)	-	-	20	3년 균등철폐
조미김 (2008-99)	6.0	즉시 철폐	45	10년 균등철폐
굴(밀폐용기) (1605-90)	4.7	10년 균등철폐	20	즉시철폐
다랑어(기름담근것) (1604-14)	35	10년 비선형 철폐	20	10년 균등철폐
오징어(냉동) (0307-49)	-	-	10	10년 비선형 철폐
넙치(활어) (0301-99)	-	-	10	3년 균등철폐

- (한국→미국) 미국 수산물 수입관세는 일부 가공품을 제외 대부분 낮은 편으로 FTA로 인한 관세 철폐 효과 미미
- (미국→한국) 한국 수산물 수입관세는 미국 생산량이 많고 국내 어종과 유사성이 높은 고등어, 민어, 넙치류, 명태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폐지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

- 미국 주수출품목인 마른김, 오징어(냉동), 넙치(활어), 미역 등은 기존 무관세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특혜가 없음
- 수출증가 가능성 있는 품목은 다랑어(기름담근것), 굴(밀폐용기에 넣은 것) 등임

〈 다랑어, 굴 수출 증가 전망〉

(단위 : 천 달러)

구 분	1~5년 평균	6~10년 평균	11~15년 평균	15년 합계	15년 평균
합 계	374	867	1,086	11,633	776
다랑어(기름담근것)	122	209	263	2,971	198
굴(밀폐용기)	252	658	823	8,663	578

- ※ 1. 자료 : 한·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('11.8.5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국책연구기관 작성)
 2. 수출증가가 이행기간 완료 이후 15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

5 | 음료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〈 물 〉				
광수와탄산수 (2201100000)	0.26센트/Li	즉시 철폐	8	5년 균등철폐
물(기타) (광수,얼음과눈 이외, 미착색) (2201909000)	-	-	8	5년 균등철폐
착색한 물 (2202101000)	0.2센트/Li	즉시 철폐	8	즉시 철폐
물(기타) (2202109000)	-	-	8	즉시 철폐
〈 음 료 〉				
식혜 (2202903000)	0.2센트/Li	즉시 철폐	8	10년 균등철폐
기타혼합음료 (2202909000)	0.2센트/Li	즉시 철폐	8	5년 균등철폐

- 알로에음료 등 기타음료에 대한 관세는 즉시철폐로 협상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

○ 향후수출전망

- 당초 관세율이 낮아 수출확대에 직접적인 요인은 안될 것으로 예상
- 한미FTA체결에 대한 효과가 미미하여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

□ 기타 참고사항

○ '11년 9월 현재 미국에 기타음료 수출현황

- ('10. 9) 16,889천불 → ('11. 9) 23,486천불(39.1% ↑)

* 기타 물(착색, 광수, 미첨가 등)은 80만불 미만 수출실적을 보이고 있음

6 과자류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곡류조제품 (1904.90.01)	14.0	5년 균등철폐	8%	5년 균등철폐
빵 (1905.90.90)	4.5	즉시 철폐	8%	10년 균등철폐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

○ 향후수출전망

- 곡류조제품, 빵류는 對미 수출 100만불 이상 품목으로 관세가 즉시 또는 5년내 철폐됨으로써 가격경쟁력 확보에 따른 수출 여건 개선에 의의가 있음

* 매년 30% 이상의 수출 신장세를 나타내고 있음

-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, 가속화됨에 따라 소비부진의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어 관세 철폐에 따른 가격경쟁력 확보에도 불구하고 수출성장률은 미진할 것으로 전망됨

□ 기타 참고사항(업계의견)

- 과자류는 현재 주요 수출국이 일본, 중국, 미국이며, 미주 지역은 교포시장 중심으로 과자류의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, 가격 경쟁력 확보에 따른 현지 시장진출 여건 조성에 힘입어 수출 확대 기대
- 수입 관세율 철폐에 따른 미국산 과자류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한국 내수시장의 국내 제과 업체의 과자류 판매 부진 등으로 수출판로 개척에 좀 더 노력할 계획임

7

소스류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된장/(춘장) (2103-90-1010) (2103-90-1020)	6.4	즉시 철폐	8	10년 균등철폐
간장 (2103-10-0000)	3	즉시 철폐	8	5년 균등철폐
고추장 (2103-90-1030)	6.4	즉시 철폐	45	5년 균등철폐
기타소스(BBQ) (2103-90-9090)	6.4	즉시 철폐	45	5년 균등철폐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

○ 향후수출전망

- 된장과 고추장은 현지인 시장 진입이 어려운 품목 중 하나로 주로 교포시장으로 수출되고 있기 때문에 관세율 인하에 따른 가격하락이 수출확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
- 간장 및 BBQ소스는 현지 유통되는 다양한 제품들과의 경쟁이 심한 상태이므로 관세철폐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하여 수출확대 폭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

□ 기타 참고사항(업계의견)

- 된장과 고추장 등은 교포시장이 주축을 차지하므로 관세철폐에 따른수출확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간장의 경우 일본산 수준의 품질에서 가격경쟁력을 갖추면 수출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나 관세가 3%로 낮아 그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전망

8 면 류

□ 주요품목 FTA 협상타결 현황

품목 (HS Code)	미국		대한민국	
	관세율(%)	협상결과	관세율(%)	협상결과
라면 (1902-30-10)	6.4	즉시철폐	8	즉시철폐
국수 (1902-19-10)	6.4	즉시철폐	8	5년 균등철폐
냉면 (1902-19-30)	6.4	즉시철폐	8	5년 균등철폐
기타파스타 (1902-30-90)	6.4	즉시철폐	8	즉시철폐

- 면류의 주요 수출품목은 라면, 기타파스타, 국수 당면 등의 있으며 한미 FTA 체결로 관세 즉시 되는 품목이 대부분임

□ FTA 발효에 따른 향후 수출 전망

○ 對미 면류 수출동향

- 면류의 대미수출은 46백만불 수준이며 최근 수출 증가율은 20%이상을 기록하며 있으며 관세철폐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에 수출확대 전망
- 품목별 수출동향('10) : 라면 19.7백만불, 국수 10, 기타파스타 10.9, 냉면 2백만불

○ 향후 수출전망

- 한미 FTA체결로 6.4% 관세철폐로 한국산과 경쟁상품인 일본산 면류에서 가격경쟁력 우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
- 면류의 주도적인 수출품은 라면, 국수, 냉면 등으로 한국식품의 매운맛과 전통식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한식전파에 따른 수출 증가세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
- 교민마켓 위주의 시장에서 동양계, 히스패닉 시장으로 확대되고 있음
- 또한 업계에서는 한국면류의 품목다양화를 통해 한국적인 맛과 전통적인 맛의 접목한 품목 개발을 통해 장기적으로 수출확대 노력

참고 1 양허유형별 주요 대상품목

양허유형	품목수	비중(%)	대미수출액 (백만불)	비중(%)	주요 품목
10년 철폐, 수입쿼타	26	1.4	0.32	0.1	낙농품(300MT)
15	65	3.6	0.03	0.0	멧쌀, 쇠고기, 치즈
10	154	8.5	4.33	1.9	설탕, 면화
7	91	5.0	30.92	13.8	담배, 대두유(조유), 채소(조제저장)
6	1	0.1	0.00	0.0	호두(탈각)
5	401	22.1	4.56	2.0	아이스크림, 버섯
2	10	0.6	0.20	0.1	자두(조제저장), 단백질계 물질
즉시 철폐	1,065	58.7	184.33	82.0	라면, 배, 조제식료품, 음료, 주류, 간장, 된장, 고추장, 삼계탕, 김치, 포도주스, 오렌지주스(냉동)
합계	1,813	100	224.70	100	

참고 2 한·미 FTA 체결관련 주요 품목별 업체 의견

업체	품목	내용
A	버섯	새송이, 팽이버섯이 미국으로 주로 수출되고 있는데 관세가 철폐되면 물량은 기존대비 약 10%정도 상승될 것으로 예상
B	김치	미국 현지 로컬브랜드(약 30개)가 난무하여 정상가에 납품을 못하고 있는 실정임. 관세철폐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할 예정이므로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추정됨
C	라면	생생우동 등 몇 개 라면을 제외하고는 LA현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여 소비시장 납품하고 있음. 소비자들이 먹는 물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관세철폐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. 현지 수입업체의 노력과 한국정부의 지원으로 소비효과 증대 필요.
D	아이스크림	관세철폐로 수출단가가 낮아지면 수출확대기회는 있으나 교포시장은 포화 상태에 있어 수출확장 여지가 낮음. 미국주류시장 진입을 목표로 제품 차별화 및 브랜드인지도를 제고 시킬 수 있는 집중적 홍보활동 필요.
E	삼계탕	미국은 위생검역상의 이유로 축산물 수입에서 한국을 축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해외 도축장(Eligible Foreign Establishments)에서 제외시켜 한국 축산품의 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. 한미FTA가 발효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축산물 시장인 미국에 바로 수출할 수 없으나 FTA가 비준되면 향후 삼계탕을 수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은 있음.

참고 3

한·미 FTA 농수산물분야 협상결과

가 농산물 분야

- (쌀) 협상대상에서 제외
- (축산물) 가장 민감한 쇠고기 관세폐지기간 장기화에 노력
 - 쇠고기(관세율 40%) : 15년간 관세폐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
 - 냉장 삼겹살·목살(22.5%) : 10년간 관세폐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 설정
- (낙농품) 철폐기간을 장기화 조건으로 무관세로 일정물량 제공
 - 혼합분유(관세율 36%) : 10년간 관세폐지
 - 치즈(관세율 36%) : 15년간 관세폐지, 무관세 물량 7,000톤 제공
 - 버터(관세율 89%) : 10년간 관세폐지, 무관세 물량 200톤 제공
- (고추·마늘·양파) 15년간 관세폐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
- (과수) 사과, 배, 오렌지에 대하여는 관세폐지 장기화 또는 계절 관세(성출하기에 현행관세유지) 적용
 - 사과(관세율45%) : 후지 20년간 관세 폐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,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폐지, 농산물 세이프가드 적용
 - 배(45%) : 동양배 품종 20년간, 기타 품종 10년간 관세폐지
 - 오렌지(50%) : 계절관세 기간(9~2월) 중 현행관세 유지 및 무관세 물량(2,500톤) 제공, 비성수기(3~8월)는 7년간 관세폐지
 - 감귤(온주밀감 : 144%), 맨더린(144%) : 15년간 관세폐지

나 수산물 분야

- 미국 생산량이 많고 국내 어종과 유사성이 높은 고등어, 민어, 넙치류, 명태 등의 관세를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폐지
 - 냉동고등어(관세율10%) : 12년간 관세폐지
 - 냉동 민어(10%) : 12년간 관세폐지, 무관세물량 1,000톤 (매년 5%증량)
 - 냉동넙치류(10%) : 12년간 관세폐지, 무관세물량 1,530~3,303톤
 - 냉동 명태(10%) : 15년간 관세폐지, 무관세 물량 4,000~12,263톤

참고 4 한·미 FTA 농수산물분야 영향 분석

- 최근 여건 및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결과, 한미 FTA로 인해 수입이 8,445억원 증가(연평균)하고, 생산액은 12조 6,683억원 감소 추정
- ('07년분석과 비교) 수입증가 효과는 연평균 1,466억원증가, 생산액 감소 영향은 2조 1,998억원 증가

〈 분야별 농수산업 생산 감소액(억원)〉

구분	기존분석('05년통계적용)		재분석('08년 통계 적용)	
	15년 누적	연평균	15년 누적	연평균
농산물	100,470	6,698	122,252	8,150
수산물	4,215	281	4,431	295
총 계	104,685	6,979	126,683	8,445

※ 對미 수입 및 생산 감소액 증가 이유

- 그 간의 농산물 대미 수입의 급증과 생산증가추세가 최신 통계에 반영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판단

* 자료원 : 한미 FTA 경제적 효과 재분석 2011. 8. 5 / 대외경제정책연구원, KREI 등 10개 기관

참고 5
주요 품목별 對미국 수출실적

(단위 : 톤, 천불, %)

품 목	물 량	금액	비중(금액기준)
라 면	6,185	19,786	12.6%
배	10,182	25,413	47.0%
기타조제식료품	1,795	4,631	35.5%
음 료	31,629	25,065	24.4%
주 류	15,241	18,396	5.9%
간 장	3,597	3,170	27.1%
된 장	1,741	2,867	46.9%
고 추 장	2,807	5,078	30.2%
삼 계 탕	0.1	1	0.01%
김 치	868	2,695	2.7%
포 도 주 스	0.4	1	1.0%

자료: KATI, 2010년 수출액 기준

참고 6 미국의 농산물 수입구조

〈 미국의 주요 농산물 수입현황('10) 〉

구분	품 목	수입액 (백만불)	수입 비중	증감 (10/09)	국가별 수입비중(%)
	농산물 전체	73,882	100	14.66	
1	커피	3,738	5.06	21.47	브라질(28.5), 콜롬비아(19.6), 베트남(16.2)
2	맥주	3,534	4.78	5.37	멕시코(45.8), 화란(26.9), 캐나다(6.2), 한국(0.06)
3	포도주	3,447	4.66	4.28	이탈리아(32.3), 프랑스(17.1), 호주(16),
4	천연고무	2,360	3.19	130.47	인도네시아(70.6), 태국(13.3), 말레이시아(5.3)
5	토마토	1,798	2.43	28.12	멕시코(82.7), 캐나다(16.3), 과테말라(0.4)
6	바나나	1,789	2.42	13.44	과테말라(25.9), 에콰도르(24.3), 코스타리카(18.9)
7	보드카	1,683	2.28	12.59	프랑스(39.0), 스웨덴(25.3), 화란(13.9), 러시아(8.4)
8	기타 조제식료품	1,566	2.12	15.86	캐나다(33.7), 멕시코(10.9), 태국(7.6), 영국(5.0), 한국(2.2)
9	빵, 케이크 등 베이커리제품	1,520	2.06	15.49	캐나다(46.2), 멕시코(18.9), 이탈리아(4.9) 한국(1.7)
10	위스키	1,338	1.81	14.82	영국(74.4), 캐나다(17.1), 아일랜드(7.9),
11	포도	1,282	1.74	22.34	칠레(57.7), 멕시코(36.2), 페루(3.8), 한국(0.06)

자료 : Global Trade Atlas

참고 7 **한미 FTA 추진현황**

- '06. 2월 출범 선언 후 8차례 공식 협상과 두 차례 고위급 협의를 거쳐 최종 타결('07. 4. 2)되었으며, '07. 6. 30 정식서명
- '07. 11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한·미 FTA 보완대책 발표
- '09. 4. 22, 한·미 FTA 비준 동의안 국회 외통위 통과
- '10. 11. 30~12. 3일 한미 통상장관회의를 개최(메릴랜드주 콜럼비아시), 자동차 등 제한된 범위내에서 추가협상 타결
- '11. 6. 3, 추가협상 합의문서와 기존 비준동의안 국회 제출
- '11. 11. 22, 국회 본회의 비준안 통과
- '12. 1. 1 한·미 FTA 발효 예정

aT Focus

2011. 1. 28 창간

발 행 처 : 농수산물유통공사

발 행 일 : 2011년 11월

주 소 : 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672 aT센터

문 의 처 :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
02) 6300-1393, 1399 / info1@kati.net

본 자료는 KATI(www.kati.net) > 무역정보 > 발간책자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.

* 본 자료는 aT 수출개발처의 각 품목담당팀(농산수출팀, 수산임산수출팀, 식품수출팀)에서 작성한 자료이며, 참고 자료는 수출전략처 식품수출정보팀에서 정리하여 취합한 자료입니다.

본 자료에 대한 문의사항 또는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위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